

제31차 조합원 정기총회

▣ 일시 : 2021년 2월 6일 (토) 09:00 ~ 16:00

▣ 장소 : 조합 각 영업점



부평대건신용협동조합

- 대표주소 : 인천시 부평구 화랑북로 15-3
- 전화 : (본점) 519-6264 (지점) 519-6263
- 팩스 : (0505) 519-6200
- 일반인터넷 : www.sinhyeop.co.kr
- 상담인터넷 : incheon.cu.co.kr

총회자료목차

| 목 차 | 페이지 |
|---------------------------|-----|
| 1. 전차회의록 | 3 |
| 2. 202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안) | 5 |
| 3. 2020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안) | 7 |
| 4. 2021년도 상임이사장 보수 승인(안) | 10 |
| 5.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 10 |
| 6. 정관 개정 승인(안) | 15 |

조 합 현 황

▣ 연혁

1990'S History

- 1990.07.01 창립총회(초대 이사장 박성기)
- 1992.03.09 재무부인가 (인가번호 : 03-201)
- 1993.11.02 신탁공제(협동조합보험 취급 개시)
- 1994.02.20 제4차 정기총회, 산곡3동천주교회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1995.02.09 제5차 정기총회(제2대 이사장 박성기)
- 1996.02.25 제6차 조합원정기총회, 단체조합에서 지역조합으로 전환
- 1998.02.22 제8차 정기총회(제3대 이사장 박성기)

2000'S History

- 2000.02.27 제10차 정기총회, 부평대건신용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 2002.02.24 제12차 정기총회(제4대 이사장 이정옥)
- 2003.10.22 현대카드 제휴발급개시
- 2004.01.01 신탁 예금자보호제도 시행
- 2005.07.01 대출 개인신용평점시스템 도입
- 2006.02.25 제16차 정기총회(제5대 이사장 이정옥), 출자 1좌의 금액을 1만원으로 변경
- 2008.06.01 신탁 자체 자기앞수표 발행

2010'S History

- 2010.02.27 제20차 정기총회(제6대 이사장 김장현)
- 2011.07.01 신탁 스마트폰뱅킹업무 개시

- 2012.09.04 신협공제 예금자보호제도 시행
- 2014.02.22 제24차 정기총회(제7대 이사장 김장현)
- 2015.01.29 국내최초 기부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 출범
- 2017.07.01 출자금인출제도 변경
- 2018.02.10 제28차 정기총회(제8대 이사장 김장현), 출자 1좌의 금액을 5만원으로 변경
- 2018.08.24 자산 1천억원 달성
- 2019.02.16 제29차 정기총회, 출자 1좌의 금액을 5만원으로 변경

2020'S History

- 2020.12.15 여성영업권역 확대 (인천 부평구 => 인천·경기 전역)

▣ 일반현황

| 구 분 | 적요 |
|--------|-----------------------------------|
| 법적근거 | 신용협동조합법 : 법률 제2338호 공포 1972.08.17 |
| 조합명 | 부평대건신용협동조합 |
| 영업점 | 본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화랑북로 15-3 (산곡동) |
| | 지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영로 196 (부평동) |
| 임의창립 | 1990.07.01 |
| 이사장 | 김장현 |
| 임직원수 | 임원 10명 (이사 7명, 감사 3명), 직원 12명 |
| 공동유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출자1좌금액 | 50,000원 |
| 사업년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30차 정기총회 회의록(요약본)

1. 회의종류 : 제30차 조합원 정기총회
2. 소집년월일 : 2020. 1. 28
3. 개최년월일 : 2020. 2. 8
4. 회의장소 : 산곡3동 천주교회
5. 정족수 확인 : 출석조합원 334명 (총 8,403명중 의결권제한자 3,083명 제외)
6.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사장 김장현(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오전 11시 00분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 선언
7.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정관 제40조에 의하여 한은영, 안지호, 박정해 조합원을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선임
8.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전차회의록을 낭독 후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승인

9. 의사일정 확정

기 배부된 의사일정 진행순서를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확정

10. 의안별 결의결과

제1호 의안 ~ 제5호 의안 : 김태석 조합원의 일괄상정 제안에 박종훈 조합원이 재청하여 의장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일괄상정하여 출석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부의안건별 원안 승인

11. 폐회선언

이상 부평대건 신용협동조합 제30차 조합원 정기총회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기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장이 11시 7분 폐회를 선언하다.

2020. 2. 8

의장 : 김장현 의사록 기명날인인 : 한은영, 안지호, 박정해 서기 : 부장 정명주

信用協同組合의 理念

“신협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믿음과 나눔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협은 조합원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이익은 조합원에게 환원하는, 조합원 중심의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 信協運動의 至上目標 | 信協運動의 精神 | 信協運動의 3大課題 |
|------------|----------------|---|
| 福祉社會 建設 | 自 自 協 助 立 同 | 잘살기 위한 經濟運動 더불어 사는 倫理運動 社會를 밝힐 教育運動 |

제1호 의안 : 2020년도 감사보고서 승인(안)

■ 제안사유

2020년도 조합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받고자 함.

■ 결의주문

2020년도 감사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승인함.

■ 제의관계조항

가. 신탁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나. 정관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붙임]

1. 2020년도 감사보고서.
2. 외부회계감사보고서.

2020년도 감사보고서

신용협동조합법 제37조(감사의 임무), 제47조(회계 및 결산) 및 정관 제47조(감사의 직무)에 의거, 2020년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실시사항

| 감사구분 | 감사실시일 | 감사자 |
|-------|-------|---------------|
| 자체감사 | 1/4분기 | 고명암, 박종필 |
| | 2/4분기 | 고명암, 박종필, 김연희 |
| | 3/4분기 | 고명암, 박종필, 김연희 |
| | 4/4분기 | 고명암, 박종필, 김연희 |
| 신탁중앙회 | 순회감독 | 박덕규 |
| | 순회감독 | 이진오 |
| 회계감사 | 1차 | 회계법인 길인 |
| | 2차 | |

2) 감사의견

- 제반문서 보존 및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회계상 계수의 정확성과 그 처리과정이 적절하였습니다.
- 부실여신 발생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대출금 총당률을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 목표관리시스템의 정착으로 경영 및 사업부문의 성과가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 대출이용자의 신용하락으로 일부 연체가 발생되고 있으니 상환능력을 검토하여 우량대출 취급 및 자산건전성을 제고바랍니다.
- 재무구조가 양호합니다. 계속 조합원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6일

대표감사 고명암



감사 박종필



감사 김연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부평대건신용협동조합 조합원 및 이사회 귀중
2021년 2월 6일

<감사의견>

우리는 부평대건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조합의 재무제표는 조합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금융위원회가 정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과 대한민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회계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조합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 기업 관련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조합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조합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29길 20
길인회계법인 대표이사 성 주 형



제2호 의안 : 2020년도 결산보고서 승인(안)

■ 제안사유

2020년도 결산보고서를 승인받고자 함.

■ 결의주문

2020년도 결산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승인함.

■ 제의관계조항

가. 신탁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나. 정관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붙임]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세입세출 예산/실적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재 무 상 태 표

당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201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과목 | 당기 | 전기 |
|--------|-----------------|-----------------|-----------|-----------------|-----------------|
| 자산 | 159,811,609,910 | 138,473,674,604 | 부채 | 148,360,682,100 | 128,802,581,204 |
| 현금및예치금 | 48,040,033,134 | 43,308,667,295 | 예수부채 | 146,073,915,067 | 126,590,708,831 |
| 유가증권 | 6,388,987,767 | 2,209,474,695 | 요구불예금 | 17,524,250,913 | 13,692,652,954 |
| 대출채권 | 101,101,634,761 | 90,189,052,948 | 기한부예금 | 128,549,664,154 | 112,898,055,877 |
| 유형자산 | 2,584,487,242 | 1,187,296,093 | 기타부채 | 2,286,767,033 | 2,211,872,373 |
| 기타자산 | 1,696,467,006 | 1,579,183,573 | 자본 | 11,450,927,810 | 9,671,093,400 |
| | | | 자본금 | 7,161,741,363 | 5,659,112,398 |
| | | | 이익잉여금 | 4,201,996,680 | 3,960,421,751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87,189,767 | 51,559,251 |
| 총계 | 159,811,609,910 | 138,473,674,604 | 총계 | 159,811,609,910 | 138,473,674,604 |

손 익 계 산 서

당기 2020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전기 201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과목 | 당기 | 전기 |
|-----------------|----------------------|----------------------|
| 영업수익 | 4,741,567,280 | 4,665,996,626 |
| (1)이자수익 | 4,264,076,714 | 4,166,596,675 |
| (2)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 13,448,489 | 0 |
| (3)대출채권평가및처분이익 | 49,000,084 | 0 |
| (4)수수료수익 | 219,571,929 | 338,068,721 |
| (5)기타영업수익 | 195,470,064 | 161,331,230 |
| 영업비용 | 4,288,724,668 | 4,281,279,804 |
| (1)이자비용 | 2,711,916,095 | 2,256,934,035 |
| (2)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 0 | 0 |
| (3)대출채권평가및처분손실 | 0 | 510,077,833 |
| (4)수수료비용 | 95,109,557 | 89,008,296 |
| (5)기타영업비용 | 64,668,852 | 64,412,629 |
| (6)판매비와관리비 | 1,417,030,164 | 1,360,847,011 |
| 영업이익(손실) | 452,842,612 | 384,716,822 |

| 과목 | 당기 | 전기 |
|----------------|-------------|-------------|
| 영업외수익 | 17,617,046 | 3,800,057 |
| 영업외비용 | 16,678,993 | 7,194,260 |
| 경상이익(손실) | 453,780,665 | 381,322,619 |
| 비신용사업법인세차감전순손익 | 0 | 0 |
|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 453,780,665 | 381,322,619 |
| 법인세등 | 52,253,090 | 43,574,910 |
| 당기순이익(손실) | 401,527,575 | 337,747,709 |

세입·세출 예산/실적표

(단위 : 원, %)

| 지출 | 예산액 | 실적액 | 실적비 | 수입 | 예산액 | 실적액 | 실적비 |
|-------|---------------|---------------|--------|--------------------|---------------|---------------|--------|
| 영업비용 | 5,090,076,000 | 4,313,459,500 | 84.74 | 영업수익 | 5,544,060,000 | 4,766,302,112 | 85.97 |
| 영업외비용 | 339,180,000 | 562,344,263 | 165.80 | 영업외수익 | 331,330,000 | 563,282,316 | 170.01 |
| 예비비 | 20,000,000 | 0 | 0.00 | 비신용사업법인세차 감전순손익 | 20,000 | 0 | 0.00 |
| 법인세등 | 45,100,000 | 52,253,090 | 115.86 | | | | |
| 지출합계 | 5,494,356,000 | 4,928,056,853 | 89.69 | 수입합계 | 5,875,410,000 | 5,329,584,428 | 90.71 |
| 당기순이익 | 381,054,000 | 401,527,575 | 105.37 | 당기순손실 | 0 | 0 | 0.00 |
| 총계 | 5,875,410,000 | 5,329,584,428 | 90.71 | 총계 | 5,875,410,000 | 5,329,584,428 | 90.7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당기 2020년 01월 01일 부터 전기 2019년 01월 01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2019년 12월 31일 까지
 처분확정일 2021년 02월 06일 처분확정일 2020년 02월 08일

(단위 : 원)

| 과목 | 당기 | 과목 | 전기 |
|-----------------|-------------|-----------------|-------------|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527,996,680 | I. 미처분이익잉여금 | 409,421,751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26,469,105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71,674,042 |
| 2. 전기오류수정이익 | | 2. 전기오류수정이익 | |
| 3. 전기오류수정손실 | | 3. 전기오류수정손실 | |
| 4. 당기순이익 | 401,527,575 | 4. 당기순이익 | 337,747,709 |
| II. 적립금이입액 | | II. 적립금이입액 | |
| 합계 | 527,996,680 | 합계 | 409,421,751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400,973,176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 282,952,646 |
| 1. 법정적립금 | 53,000,000 | 1. 법정적립금 | 41,000,000 |

| | | | |
|---------------|-------------|---------------|-------------|
| 2.특별적립금 | 106,000,000 | 2.특별적립금 | 82,000,000 |
| 3.임의적립금 | 106,000,000 | 3.임의적립금 | |
| 4.배당금 | 135,973,176 | 4.배당금 | 159,952,646 |
| 배당률 : 2.17% | | 배당률 : 3.05% | |
| IV.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 127,023,504 | IV.차기이월미처분잉여금 | 126,469,105 |

제3호 의안 : 2021년도 상임이사장 보수 승인(안)

■ 제안사유

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으로 계산한 총자산이 300억원이상인 조합의 이사장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이를 상정함.

■ 결의주문

2021년도 상임이사장 보수를 아래와 같이 승인함.

===== 아 래 =====

(단위 : 원)

| 연간기본보수 | 연간성과보수 | 연간보수합계 |
|--------------------------------|----------------|-------------|
| 90,000,000 (7,500,000*12개월) | 연간 기본보수의 20%이내 | 기본보수 + 성과보수 |

■ 제의관계조항

- 가. 신탁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나. 정관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4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안)

■ 제안사유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받고자 함.

■ 결의주문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붙임과 같이 승인함.

■ 제의관계조항

- 가. 신탁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 나. 정관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붙임]

- 1. 사업계획서(안) 1부. 2. 예산서(안) 1부.

사업계획서(안)

1. 경영목표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인천 최고의 신탁을 만든다
<인천 부평구민의 금융·복지 평생파트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구축
- 맞춤형금융서비스 제공 및 협동조합 역할 제고
- 윤리·투명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정도경영 실현

2. 경영방침

조직

1. 지속적인 경영내실화
2. 책임경영체제 구축
3. 자원의 합리적 배분
4. 임직원 전문성 강화

| | |
|----|---|
| 사업 | 1. 건전여신 확대 2. 비이자수익 확대 3. 조합원 편의 금융서비스 확대 4. 사회공헌활동 추진 |
| 경영 | 1.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2. 재무구조 건전화 3. 리스크관리 4. 조합원 만족 경영 |

3. 부문별 중점사업 방향

| 전략관점 | 추진방향 | 실천사항 |
|------|-------------|--|
| 수익 | 합리적 수익구조 실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대출 증대 ▪ 저원가성예금 증대 ▪ 연체대출 감축 |
| 조합원 | 조합원만족 서비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조합원 매출증대활동 전개 ▪ 거래불편조합원 차량봉사 ▪ 조합원 건강관리 ▪ 조합원 여가활동 지원 ▪ 참조합원 우대서비스 확대 |
| 마케팅 | 경쟁력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셜네트워크 활용 조합활동 홍보 ▪ 조합 서포터즈 운영 |
| 금융시장 | 리스크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액/편중여신 지양 ▪ 여신변동주기 관리 |
| 프로세스 | 업무처리 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립식저축 1인 1계좌이상 개설 ▪ 거래자관리(신규거래자, 정상거래자, 휴면거래자) ▪ 교차판매 정례화 |
| 시스템 | 경영인프라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 구축 ▪ 경영컨설팅 ▪ 조합원 만족경영 |
| 임직원 | 역량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교육 강화 ▪ 친절응대프로그램 ▪ 윤리경영 |

예산서(안)

1. 예산총칙

제1조 : 2021년도 일반회계 (2021. 1. 1 ~ 2021. 12. 31)의 총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 구분 | 총 계 | 경상예산 | 자본예산 |
|-----|-----------|-----------|-----------|
| 수입 | 7,801,580 | 5,808,980 | 1,992,600 |
| 지출 | 7,057,743 | 5,065,143 | 1,992,600 |
| 잉여금 | 743,857 | 743,857 | |

제2조 : 회계별 수지 및 자본예산명세서는 별첨과 같다.

제3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에 수립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다만,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등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 예산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비목 및 금액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목표 초과달성 및 금리변동으로 인한 초과영업비용, 퇴직급여금,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제세공과금,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복구 비용 등 기타영업외비용, 법령 및 중앙회 지침에 따른 소요비용은 예산관리자(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이하 같다)의 결재를 득하여 초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 동일한 항내의 목간 전용은 예산관리자의 결재로 집행한다. 동일한 관내의 항간 조정은 예산관리자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항에서 업무추진비로의 전용은 이사회의결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 예산관리자는 사업연도 중 영업실적의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기타 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예산비목, 인건비성 예산비목, 초과집행이 가능한 예산비목을 제외하고 예산의 10%내외에서 절감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 예비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예산관리자가 집행하되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 신탁법 제48조에 의거 조합의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집행, 관리에 관하여는 중앙회장이 정하는 사항에 의한다.

2. 비교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 천원)

| 과목 | 2021년도 | 2020년도 | 증감 | 과목 | 2021년도 | 2020년도 | 증감 |
|--------|-------------|-------------|-------------|-----------|-------------|-------------|------------|
| 자산 | 170,000,000 | 156,000,000 | 14,000,000 | 부채 | 157,455,574 | 145,360,946 | 12,094,628 |
| 현금및예치금 | 8,400,000 | 18,400,000 | -10,000,000 | 예수부채 | 155,951,395 | 143,405,946 | 12,545,449 |
| 유가증권 | 4,000,000 | 1,650,000 | 2,350,000 | 차입부채 | | | |
| 대출채권 | 151,527,626 | 120,287,523 | 31,240,103 | 기타부채 | 1,504,179 | 1,955,000 | -450,821 |
| 유형자산 | 4,485,073 | 3,192,477 | 1,292,596 | 비신용사업계정 | | | |
| 기타자산 | 1,587,301 | 12,470,000 | -10,882,699 | 자본 | 12,544,427 | 10,639,054 | 1,905,373 |
| | | | | 자본금 | 8,202,570 | 6,640,000 | 1,562,570 |
| | | | | 자본잉여금 | | | |
| | | | | 이익잉여금 | 4,294,857 | 3,952,054 | 342,803 |
| | |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47,000 | 47,000 | |

| 과목 | 2021년도 | 2020년도 | 증감 | 과목 | 2021년도 | 2020년도 | 증감 |
|----|-------------|-------------|------------|----|-------------|-------------|------------|
| 계 | 170,000,000 | 156,000,000 | 14,000,000 | 계 | 170,000,000 | 156,000,000 | 14,000,000 |

3. 비교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천원)

| 과목 | 2021년도 | 2020년도 | 증감 | 과목 | 2021년도 | 2020년도 | 증감 |
|----------------|-----------|-----------|----------|----------------|-----------|-----------|----------|
| 영업비용 | 4,807,973 | 5,085,086 | -277,113 | 영업수익 | 5,652,650 | 5,544,070 | 108,580 |
| (1)이자비용 | 2,224,820 | 2,642,570 | -417,750 | (1)이자수익 | 5,199,110 | 5,101,340 | 97,770 |
| (2)유가증권평가및처분손실 | 120 | 120 | | (2)유가증권평가및처분이익 | 120 | 120 | |
| (3)대출채권평가손실 | 180,020 | 220,020 | -40,000 | (3)대출채권평가이익 | 40 | 40 | |
| (4)수수료비용 | 260,610 | 214,200 | 46,410 | (4)수수료수익 | 333,040 | 322,230 | 10,810 |
| (5)기타영업비용 | 83,020 | 80,620 | 2,400 | (5)기타영업수익 | 120,340 | 120,340 | |
| (6)판매비와일반관리비 | 2,059,383 | 1,927,556 | 131,827 | 영업외수익 | 156,330 | 331,330 | -175,000 |
| 영업외비용 | 163,320 | 339,180 | -175,860 | 비신용사업법인세차감전순손익 | 20 | 20 | |
| 법인세등 | 93,850 | 44,710 | 49,140 | | | | |
| 예비비 | 20,000 | 20,000 | | | | | |
| 지출계 | 5,085,143 | 5,488,976 | -403,833 | 수익계 | 5,809,000 | 5,875,420 | -66,420 |
| 당기순이익 | 723,857 | 386,444 | 337,413 | 당기순손실 | 0 | 0 | |
| 총계 | 5,809,000 | 5,875,420 | -66,420 | 총계 | 5,809,000 | 5,875,420 | -66,420 |

4. 자본예산서

(단위 : 원)

| 구분 | 과목 | 단위 | 수량 | 금액 |
|----|----------|------------|----|---------------|
| 본점 | 유형자산 | | | 1,872,700,000 |
| | 토지 | | | 1,000,000,000 |
| | 영업용부동산 | | | 1,000,000,000 |
| | 건물 | | | 650,000,000 |
| | 인테리어공사 | | | 390,000,000 |
| | 승강기 | | | 120,000,000 |
| | 냉·난방기 | | | 40,000,000 |
| | 공사관련부대비용 | | | 100,000,000 |
| | 구축물 | | | 50,000,000 |
| | 자동화기기부스 | | | 20,000,000 |
| | 울타리구축 | | | 30,000,000 |
| | 비품및집기 | | | 172,700,000 |
| | 지폐계수기 | 1,300,000 | 2 | 2,600,000 |
| | 자동화기기 | 9,000,000 | 3 | 27,000,000 |
| | 통신장비 | 3,500,000 | 1 | 3,500,000 |
| | 순번대기시스템 | 10,000,000 | 2 | 20,000,000 |

| 구분 | 과목 | 단위 | 수량 | 금액 |
|----|---------|-------------|----|-------------|
| | UPS | 14,300,000 | 1 | 14,300,000 |
| | 간판 | 2,500,000 | 3 | 7,500,000 |
| | 내화금고 | 1,000,000 | 1 | 1,000,000 |
| | CCTV | 10,000,000 | 1 | 10,000,000 |
| | 카운터 | 5,000,000 | 2 | 10,000,000 |
| | 책상 | 1,000,000 | 6 | 6,000,000 |
| | 의자 | 1,800,000 | 6 | 10,800,000 |
| | 책장 | 3,000,000 | 4 | 12,000,000 |
| | 옷장 | 200,000 | 5 | 1,000,000 |
| | 냉장고 | 500,000 | 4 | 2,000,000 |
| | 디지털창구 | 1,500,000 | 2 | 3,000,000 |
| | 빔프로젝터 | 1,500,000 | 1 | 1,500,000 |
| | 통장인쇄기 | 900,000 | 2 | 1,800,000 |
| | 컴퓨터 | 900,000 | 4 | 3,600,000 |
| | 문서세단기 | 1,100,000 | 1 | 1,100,000 |
| | 모빌랙 | 4,000,000 | 1 | 4,000,000 |
| | 예비비 | 30,000,000 | 1 | 30,000,000 |
| 지점 | 유형자산 | | | 119,900,000 |
| | 비품및집기 | | | 119,900,000 |
| | 지폐계수기 | 1,300,000 | 3 | 3,900,000 |
| | 디지털창구관련 | 1,000,000 | 2 | 2,000,000 |
| | 업무용PC | 1,000,000 | 2 | 2,000,000 |
| | 테트라 | 1,000,000 | 2 | 2,000,000 |
| | 환경개선공사 | 100,000,000 | 1 | 100,000,000 |
| | 예비비 | 10,000,000 | 1 | 10,000,000 |

제5호 의안 : 정관 개정 승인(안)

■ 제안사유

조합운영의 근간이 되는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 결의주문

정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 제의관계조항

가. 신탁법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나. 정관 제33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불 임]

1. 표준정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합정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표준정관 일부 개정(안)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신협중앙회 이사회에서 표준정관이 개정되어 이를 채택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지사무소 소재지 기재사항 삭제 및 설치근거 신설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3. 시행일

- 이 정관은 2021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표준정관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이유 |
|---|---|---|
| 제1장 총 칙 | 제1장 총 칙 | |
| 제1절 사무소 기준 | 제1절 사무소 기준 | |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조합의 주사무소는 ()사도 ()사·군·구 ()읍·면·동에 둔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사도 사군구 읍면동) 2. (사도 사군구 읍면동) 3. (사도 사군구 읍면동) 4. (사도 사군구 읍면동) 5. (사도 사군구 읍면동)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사무소는 ()사도 ()사·군·구 ()읍·면·동에 두며, <u>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u> <삭 제> | - 항 표기 삭제 - 제2항 지사무소 설치 조항 삭제에 따른 설치근거 신설 - 지사무소 설치의 적시성 및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 제고 |
| 제5조(정관변경) 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u>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u>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 | 제5조(정관변경) ①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u>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후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한다.</u> 다만,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의 표준정관 | - 자구수정 |

| 현 행 | 개 정 안 | 개정이유 |
|--|--|------|
| 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제1호의 표준 정관에 의한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 에 의한 변경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 <u><신 설></u> | <u>부 칙</u>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 |

<붙임2>

정관 개정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탁운동을 널리 확대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조합 경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임이사제를 도입하고자 함.
- 조직내 감사기능 강화로 내부감사의 인원을 축소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지역에서 조합을 대표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여 신탁운동을 널리 확대하고자 함. (안 제1조)
- 경영전문화를 위해 상임이사를 두고 신탁조직내 감사기능 강화로 내부감사인원을 축소함. (안 제45조)

3. 시행일

- 이 정관은 2021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부터 적용한다.

정관 심 · 구조문대비표

| 개정전 | 개정후 | 개정사유 |
|---|---|--|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신용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부평대건) 신용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제1조(설립과 명칭) 이 법인은 신용협동 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인천대건) 신용협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 이라 한다. | -신탁운동 확대를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명칭 사용 |
| 제45조(임원)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 명과 감사 (3)명 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4조제1항 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이 | 제45조(임원) ①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7) 명과 감사 (2)명 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4조제1항 에 해당할 경우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이 | -경영전문화를 위해 상임이사제 도입 -신탁조직내 감사기능 강화로 내부감사인원 축소 |

| | | |
|---|---|--|
| <p>사장과 이사 각 1명 또는 이사장과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제5항에 해당할 경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상임)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비상임이사 (5)명과 상임이사 (0)명 4. 비상임감사 (3)명과 상임감사 (0)명</p> | <p>사장과 이사 각 1명 또는 이사장과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제3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며, 제5항에 해당할 경우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상임)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1명 3. 비상임이사 (4)명과 상임이사 (1)명 4. 비상임감사 (2)명과 상임감사 (0)명</p> | |
|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사항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부터 적용한다.</p> | |